

보도자료

2010년 2월 24일(수) 낮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광혁 과장(☎750-165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천지현 사무관(☎750-1651) jh1000@kcc.go.kr**이명박정부 2년 / 방송통신분야 규제 개혁 성과****“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신시장 자율경쟁 촉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년간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 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법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통한 사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이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 개정('09.7.31. 공포)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경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80년대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나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융합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통신분야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년 2월) 하였으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09년 5월)하였다.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년 1월)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담경감 등을 추진하였다.

지난 1년간은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한해로 평가되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 대통령 취임 2주년,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 주요성과 1부. 끝.

대통령 취임 2주년,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 주요성과

방송사업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방향】

- 디지털 융합 환경의 도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방송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주요성과 】

①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 1인 소유지분 확대(30%→40%) 및 신문사·대기업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지상파 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30%)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규정 삭제, 외국자본 출자 허용 확대(종합편성PP 20%, 보도전문PP 10%, 위성방송 49%)
- 신규 사업자 진출 및 추가 자본 유치가 가능해져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②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심의하도록 함
- 방송광고 제도에 대한 위헌 요소 해소 및 광고제작 분야 창의성 제고

③ 간접광고 가상광고제 도입

-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가상광고 및 교양·오락프로그램에 간접광고 도입
-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도입으로 방송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④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승인대상PP(종합,보도,홈쇼핑PP)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 연장(3년→5년)

-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계획에 의한 안정적 방송사업 운영이 가능
⇒ 이상 「방송법」 개정('09.7.31. 공포), 「방송법시행령」 개정('10.1.26. 공포)

⑤ 유료방송의 의무편성 채널 축소(17개→14개)

- ⇒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개정('09. 9월)
- 의무편성 채널 중 가장 많은 공익성 분야 채널을 통합 축소(6개→3개)
- 플랫폼사업자(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자) 채널편성권 제한 최소화 및 일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의 송출 기회를 확대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정책방향 】

- IT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세계 최고의 통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규제를 개선

【 주요성과 】

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할인 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을 확대(20%→30%)

⇒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정('09.5.18)

-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을 확대, 신속한 상품출시,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

* 결합상품 : 별도 판매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2개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통 요금할인을 수반

②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방안 마련

⇒ 「요금인하 기본방향 제시 및 사업자 자율추진 협조」 ('09. 9월)

- 과금체계 변경(10초→1초 단위), 가입비·장기가입자 요금 등 인하로 국민 통신비 경감 및 무선데이터요금 인하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여

③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도 완화 및 이용요금 인가제 개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09. 2월), 국회 심의 중

- 한 번의 허가(기간통신역무)를 받으면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사업(주파수할당이 필요한 역무를 제외)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함
- 신규 사업자 진출 용이 및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 분위기 조성

【정책방향】

- o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주요성과】

①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결격사유 적용기간 단축(3년→1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09. 2월), 국회 심의 중

-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완화
- 금고형에 비해서 낮은 제재인 벌금형에 대한 과도한 규제(금고이상의 실형도 3년간 임원금지) 합리화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논란을 해소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선(공표기간 : 최장 30일⇒10일)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정 ('09. 3월)

- 사업자의 공표요건을 명확히 하고(피해자가 불특정 다수 등) 공표하는 신문 선정기준 마련 및 인터넷 공표기간을 단축(기존 7~30일⇒ 2~10일)
- 공표명령 이행을 위한 기간 단축 및 소요비용 감소로 기업부담 경감

* 공표명령제도 :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 인터넷 등에 스스로 게시토록 하는 제도

③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고시」 개정 ('09. 6월)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신고시 적용되는 진단기준일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 제출서류 준비 등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

④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개선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09. 1월)

- 통신서비스를 위한 무선국의 검사항목 중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와 중복되는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항목을 삭제하여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

【 정책방향 】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관련 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각종 인증 및 검사제도의 정비를 추진

【 주요성과 】

① 주파수경매제 도입

⇒ 「전파법」 개정안 국회제출 ('09. 1월) , 국회 심의 중

- 시장수요가 높은 주파수에 대해 현행 대가할당 방식 외에 경매에 의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하여 할당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및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짐

②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도입

⇒ 「전파법」 개정안 국회제출 ('09. 1월) , 국회 심의 중

- 기술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기 신제품의 경우 최소한의 공통 기술기준만 확인하고 제품 출시를 허용
- 제품 출시 기간을 대폭 단축해(6개월~1년 ⇒ 1~2개월) 적기에 신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관련 시장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③ 무선국 준공검사시 표본검사제 도입

⇒ 「전파법」 개정안 국회제출 ('09. 1월) , 국회 심의 중

- 전파 혼·간섭 우려가 적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광중계기·기지국은 준공검사시 전수검사 대신 일부만 표본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
- 검사대상 무선국 수 감소로 준공검사에 따른 행정절차 및 소요비용 등 사업자 부담 감소(기지국 검사대상 약 70% 축소시 연간 32억원 절감)

④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 제도 도입

⇒ 「전파법」 개정안 국회제출 ('09. 1월) , 국회 심의 중

- 위험정도, 불량률 등이 낮은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정부 인증심사를 면제하고 제조·수입업체 자체적으로 기술기준 적합 확인·등록할 수 있게 함

* 모든 방송통신기기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전파연구소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 가능